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 차 조사에서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규정

들어가며

옥시레킷벤키저는 당사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큰 아픔과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히, 이로 인해 손해를 입으시고, 심각한 상해로 고통 받으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당사는 그 어떤 말로도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죄와 적절한 대응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고통을 받고 계신 피해자 및 그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박동석 올림

목적

옥시레킷벤키저는 4 차 조사에서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피해자 및 가족분들의 마음에 응어리를 남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공정한 배상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배상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배상신청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희 배상안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 차 조사에서 2019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을 위한 배상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배상규정에 명시된 기한 중 일부는 피해자분들이 판정을 받으신 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분들께서는 2.5 조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배상 방안은 피해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마련되었으며, 존중,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 등 4 가지의 중요한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당사의 배상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일련의 규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상 방안은 1 차 내지 3 차 조사에서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옥시레킷벤키저는 해당 피해자분들을 위한 배상 방안을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4 차 조사 피해자 중 2019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피해자 판정을 받지 않으신 분들 및 향후의 조사에

참여하시는 피해자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복수제품 사용자 문제에 관한 관련 산업계의 전반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향후의 조사(2019년 4월 5일 이후 피해자 판정을 받으실 4차 조사 피해자 분들 포함)에 참여하시는 분들 및 2019년 4월 5일 이후에 태아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각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 차

내용	페이지
들어가며.....	A
목적.....	A
1 역할 및 책임.....	1
2 등록	2
3 배상신청의 진행.....	3
4 배상 제안	4
5 배상 합의	5
6 배상 제안의 전문가 패널 회부.....	5
7 배상액의 지급	5
8 잠정 지원금.....	7
9 건강 상태의 중대한 부정적 변경	7
10 배상청구권의 양도.....	8
11 독립적인 법률 자문	8
12 결격처리	8
13 보고	9
14 잠재적인 향후 배상 방안.....	9
15 비밀유지 의무	10
16 본 배상규정의 변경	10
17 본 배상규정의 지위	11
18 준거법.....	11
19 기타 조항	11
별표 1 용어 및 해석.....	12
별표 2 배상 공식	17
별표 3 필수 그룹 판정.....	25

별표 4 배상 제안서(안).....	27
별표 5 배상 합의서(안).....	30
별표 6 전문가 패널.....	35
별표 7 전문가 패널 결정문 서식.....	37
별표 8 경과 보고서 서식.....	39

1 역할 및 책임

1.1 배상 지원 담당자

본 배상규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하는 각각의 신청인에게는 한 명의 배상 지원 담당자가 배정된다.

배상 지원 담당자는 신청인의 문답서 작성 및 배상신청 진행을 돕고, 신청인과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배상 지원 담당자는 배상규정 1 조에 따라 배상지원 사무국이나 전문가 패널에게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1.2 배상지원 사무국

(a) 배상지원 사무국은:

- (i) 신청인이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 (ii) 작성된 문답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 (iii) 작성된 문답서,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배상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배상액을 산정하고 배상 제안을 마련한다;
- (iv) 배상규정 1.2(c)조에 따라 배상 합의의 체결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v) 배상규정에 따라 필요시, 배상 제안을 전문가 패널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배상 제안을 전문가 패널에 회부한다;
- (vi) 배상 방안에 따른 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처리하고, 배상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법률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vii) 배상 지원 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기록을 관리하며 배상 지원 담당자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그리고
- (viii) 그밖에 배상 방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배상지원 사무국에는 옥시레킷벤키저에 의해 선임된 외부 의료, 법률 전문가 그리고 외부 사무지원 인력이 참여한다.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는 옥시레킷벤키저에 의하여 선임된다.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또는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의 권한이 위임된 자)는 감정 지원금 및/또는 배상규정 11 조에 따른 법률 비용 상환액의 지급을 승인하거나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 배상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 배상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본 배상규정에 따라 체결되는 일체의 계약 내지 기타 서류에 따른 지급을 승인하거나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배상지원 사무국 내에서 유일하게 가진다.

1.3 전문가 패널

- (a) 전문가 패널은 배상 방안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b) 전문가 패널은:

- (i) 배상지원 사무국이 전문가 패널에 회부한 배상 제안을 배상규정 6 조에 따라 재검토한다;
 - (ii) (별표 6 제 1 부의 2.2 조의 적용을 전제로)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가 배상 방안에 관해 검토를 요청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조언 및 권고를 한다; 그리고
 - (iii) 배상규정 13 조에 따라 검토 보고서를 준비한다.
- (c) 전문가 패널은 별표 6 제 1 부 1 조에 따라 구성된다.

2 등록

2.1 배상규정 2.2 조의 제한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상규정 2.3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배상 방안에 대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a) 피해자(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 가족 구성원 전원을 대표하는 경우); 또는
- (b)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다른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경우).

2.2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 방안에 대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a) 등록을 하고자 하는 배상신청의 대상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선순위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신청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 (b) 등록을 하고자 하는 배상신청의 대상 피해자와 관련하여,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신청이 본 배상규정에 의해 이미 결격처리 된 경우;
- (c) 등록을 하고자 하는 배상신청의 대상 피해자와 관련하여, 배상규정 5 조에 따른 배상 합의가 체결되어 해당 배상신청이 이미 해결된 경우(단, 배상규정 9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및/또는
- (d) 배상신청의 대상 피해자의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또는 사망에 관하여 옥시레킷벤키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외의 제 3 자로부터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을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된 경우(단, 신청인이 해당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에 관련 피해자가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로 함).

2.3 신청인은 www.rb.com/kr 에 명시된 정보를 care@oxy.co.kr 로 제출하거나, www.rb.com/kr 에 안내되어 있는 팩스번호, 우편주소로 팩스,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배상 방안에 등록할 수 있다.

2.4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배상 방안에 등록하고, 신청인을 위해 배상 방안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그와 같은 대리권을 입증하여야 한다.

2.5 배상 방안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항에 따른 기간 내에 배상 방안에 등록하여야 한다.

- 2.5.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 차 조사에서 2017 년 8 월 10 일 또는 그 이전에 피해자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2018 년 8 월 31 일부터 2018 년 11 월 30 일까지. 2018 년 11 월 30 일 이후에 제출된 등록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2.5.2** 1차 조사 내지 3차 조사 신청자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8년 7월 12일 이전에 1단계 또는 2단계로 재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2018년 8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2018년 11월 30일 이후에 제출된 등록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2.5.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8년 7월 12일 또는 그 이전에 피해자 판정을 받은 피해자로서 배상규정 2.5.1 조 또는 2.5.2 조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 2018년 8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2018년 11월 30일 이후에 제출된 등록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2.5.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8년 7월 12일 또는 그 이전에 피해자 판정을 받은 피해자 중 배상규정 2.5.1 조, 2.5.2 조 또는 2.5.3 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경우: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2018년 12월 21일 까지. 2018년 12월 21일 이후에 제출된 등록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2.5.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9년 4월 5일 피해자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2019년 4월 3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2019년 7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등록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2.6** 신청인에게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가 서면으로 교부되기 전에는 해당 신청인의 등록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2.7** 만약 배상 방안에 대한 신청인의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는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배상지원 사무국은 해당 신청인에게 배상 방안에 대한 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 또는 신청인이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2.8** 배상규정 3 조에서 12 조는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상신청의 진행

- 3.1**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문답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2** 신청인은 자신의 배상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자신의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배상신청과의 관련성이 있고 가장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완결성, 정확성,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
- 3.3** 신청인들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일부로서, 배상신청 당시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와 관련된 배상신청을 한 신청인은 자신의 배상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배상규정 별표 3 에 규정된 의료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3.4** 신청인은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작성된 문답서와 증빙서류를 배상지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문답서의 일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증빙서류가 누락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배상 지원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관련 정보 및/또는 서류를 위 마감일 전까지 제공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3.5** 만약 배상규정 3.4 조에 규정된 마감일까지 문답서의 일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배상지원 사무국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배상지원 사무국이 제안하는 배상액이 낮아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 제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 3.6**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자신의 배상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자신에게 배정된 배상 지원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협조하는 한) 자신의 배상신청에 관해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4 배상 제안

4.1 배상지원 사무국은 아래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된 문답서 및 그때까지 제공된 증빙서류를 기초로 별표 2 에 규정된 배상 공식(배상 제안 시점의 것을 의미함)을 적용하여 배상 제안을 준비한다

- (a) 작성된 문답서 및 모든 필요한 증빙서류가 배상지원 사무국에 접수된 날
- (b) 다음의 날로부터 3 개월이 되는 날,
 - (i) 신청인이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배상지원 사무국이 해당 신청인에게 잠정 D 그룹 판정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 (ii) 해당 신청인에게 잠정 D 그룹 판정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를 받은 날.

4.2 배상 제안에는 배상 제안금 및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신청의 경우 장래 의료비 및 간병 비용 제공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다.

4.3 배상 제안이 신청인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배상 제안은 신청인이 이를 검토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배상 지원 담당자가 서면으로 제공한다. 배상 제안은 신청인, 옥시레킷벤키저, 또는 기타 제 3 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단순한 제안으로서, 그에 따른 지급은 배상규정 5 조에 따라 체결되는 배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4.5 신청인은 자신이 받은(또는 배상규정 6.9 조에 의해 자신이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배상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자신의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 (a) 만약 신청인이 배상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배상규정 5 조가 적용된다; 또는
- (b) 만약 신청인이 배상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배상규정 4.6 조 또는 4.7 조, 그리고 4.8 조가 적용된다.

4.6 신청인이 배상 제안에 중대한 계산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어 배상규정 4.5(b)조에 따라 배상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만약 배상지원 사무국이 그와 같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 배상지원 사무국은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상 제안을 수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수정된 배상 제안을 한다. 이 경우 배상규정 4.4 조, 4.5 조가 적용된다.

- 4.7 신청인이 배상규정 4.5(b)조에 따라 배상 제안을 거절하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배상규정 4.6 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최초 배상 제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상규정 6 조에 따라 전문가 패널에게 배상 제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8 만약 신청인이 배상 제안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해당 배상신청과 관련한 자신의 법적 권리 및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의 법적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4.9 신청인이 최초 배상 제안을 받은 이후 3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제공된 배상 제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표시를 하지 않고 그와 같은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 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다만, 전문가 패널이 배상규정 6 조에 따라 배상 제안을 재검토하는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신청인에게 전문가 패널의 결정일 또는 신청인의 전문가 패널 검토 요청 철회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여 배상규정 제 4 조에 따른 배상 제안의 수락 또는 거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상 합의

- 5.1 신청인이 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 받은(혹은 배상규정 6.9 조에 따라 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배상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배상지원 사무국은 해당 배상 제안을 반영한 배상 합의를 마련한다. 이러한 배상 합의는 신청인에게 제공되기 전에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2 배상규정 5.1 조에 따라 마련된 배상 합의는 신청인이 이를 검토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배상 지원 담당자가 서면으로 제공한다.
- 5.3 신청인에 의해 체결된 배상 합의는 신청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및 피해자 가족 구성원 전원이 피해자의 가슴기 살균제 관련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혹은 그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일체의 청구권을 완전하고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합의이다. 배상 합의를 체결하기에 앞서, 신청인은 자신이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및 피해자 가족 전원을 대신하여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5.4 배상규정 8 조에 의한 잠정 지원금 및/또는 배상규정 11 조에 의한 법률 비용 상환을 제외하고, 신청인과 옥시레킷벤키저 간에 배상 합의가 체결되기 전에는 배상신청과 관련하여 배상 방안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6 배상 제안의 전문가 패널 회부

- 6.1 신청인이 배상규정 4.7 조에 따라 전문가 패널이 배상 제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배상지원 사무국은 해당 배상 제안을 전문가 패널에 회부한다.
- 6.2 신청인은 전문가 패널이 고려하기를 원하는 사정을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자신의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전문가 패널의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6.3 배상지원 사무국, 배상 지원 담당자 그리고 옥시레킷벤키저는 해당 배상 제안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전문가 패널이 그들에게 한 질의에 응답하여야 하나, 전문가 패널이 요청하지 않은 진술을 할 수는 없다.

- 6.4** 전문가 패널은 배상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배상지원 사무국에 의해 회부된 배상 제안을 재검토한다.
- 6.5** 피해자가 D 그룹 피해자로 분류된 경우, 전문가 패널은 배상 공식을 적용하기 앞서,
- (a) 별표 3의 4 조에 따라 D 그룹 피해자로 정확히 분류되었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6.4 조에 따라 배상 제안을 재검토 한다; 또는
 - (b) 별표 3의 4 조에 따라 D 그룹 피해자로 정확히 분류되지 않았음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전신장애율을 판단하여 피해자를 A 그룹, B 그룹 또는 C 그룹으로 분류한 뒤 배상지원 사무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한다.
 - (i) 재분류된 그룹을 바탕으로 배상공식을 적용할 것
 - (ii) 피해자 및 전문가 패널에게 수정된 배상 제안을 송부할 것. 전문가 패널은 6.4 조에 따라 수정된 배상 제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
- 6.6** 배상 제안을 재검토 한 이후 전문가 패널은:
- (a) 원래의 배상 제안에 배상 공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결정하고, 배상 공식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배상 제안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또는
 - (b) 원래의 배상 제안에 배상 공식이 제대로 적용되었음을 결정하고, 배상 제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지 않는다.
- 6.7** 전문가 패널은 별표 6 제 2 부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상 제안을 재검토한다.
- 6.8** 재검토가 완료되면, 전문가 패널은 자신의 결정을 별표 7 에 규정된 형식의 서면으로 배상지원 사무국에 전달한다. 전문가 패널이 자신이 재검토한 배상 제안을 배상규정 6.5(a)조에 따라 조정할 경우, 전문가 패널은 결정문에 조정된 배상 제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 6.9** 전문가 패널의 결정(및 (해당되는 경우) 조정된 배상 제안)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교부된다. 배상규정 6.5(a)조에 따라 조정된 배상 제안은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의 승인을 받아 배상지원 사무국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배상규정 4.5 조, 4.6 조, 4.8 조 및 4.9 조(단, 배상규정 4.7 조는 제외됨)가 적용된다.
- 6.10** 배상규정 6.5(a)조에 따라 조정된 배상 제안은 신청인 및 옥시레킷벤키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단순한 제안으로서, 그에 따른 지급은 배상규정 5 조에 따라 체결되는 배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약 신청인이 배상규정 6.5(a)조에 따라 조정된 배상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해당 배상신청과 관련한 자신의 법적 권리 및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의 법적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배상액의 지급

- 7.1** 신청인과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 합의를 체결한 이후,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 합의에 명시된 배상액 상당의 금원을 신청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지정된 은행 계좌 또는 신청인이 서면으로 지정한 다른 은행 계좌로 지급하거나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7.2** 배상규정 7.1 조에 따른 지급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신청인이 서명한 배상 합의서를 수령한 후 14 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8 잠정 지원금

8.1 배상규정 8.2 조의 제한 내에서,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를 수령한 신청인은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째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자신의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잠정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잠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8.2 신청인은 다음의 경우에 잠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 (a) 해당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이미 잠정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및/또는
- (b)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이미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제외함) 또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8.3 옥시레킷벤키저가 수령한 각 잠정 지원금 신청서는 배상지원 사무국이 검토한다.

8.4 배상지원 사무국은 그 재량으로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신청인에게 잠정 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배상지원 사무국이 지급을 결정한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잠정 지원금 신청서를 수령한 후 14 일 이내에 잠정 지원금 신청서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잠정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8.5 각 피해자와 관련된 잠정 지원금은:

- (a) 배상신청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배상 제안에서 공제된다;
- (c) 배상신청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배상 합의에 따른 배상액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 (d) 관련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관한 법원 등의 판결에 의해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거나, 관련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관해 제기되었거나 계속되고 있는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서 공제된다,

나아가 잠정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잠정 지원금을 수령하기 전, 위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9 건강 상태의 중대한 부정적 변경

9.1 어느 피해자에 관해 배상 합의가 체결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해당 피해자의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관련 의료기록 및 필요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옥시레킷벤키저에게 배상 합의에 명시된 배상액을 재검토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9.2 9.1 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부정적 변경”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9.2.1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에 기인한 피해자의 사망; 또는

9.2.2 배상규정 별표 3 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폐 기능 저하를 감안함) 피해자의 전신장애율이 피해자의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에 기인하여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20% 넘게 증가하는 것

9.3 옥시레킷벤키저가 신청인으로부터 9.1 조에 따른 서면 요청을 받는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 합의 당시의 배상규정에 따른 배상 공식을 적용하여 (단, 이자의 계산은 적용하지 않음) 배상 합의에 명시된 배상액을 재검토한다. 만약 그와 같은 재검토 결과 배상 합의에서 정한 배상액보다 더 큰 배상액이 산출되면, 옥시레킷벤키저는 신청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0 배상청구권의 양도

10.1 배상 합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신청인은 신청인, 관련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 가족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여하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청구권을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양도하거나 그 양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2 신청인은 배상규정 2.3 조에 따라 배상 방안에 대한 등록을 신청한 날 및 그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옥시레킷벤키저가 아닌 자에게 여하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청구권 또는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양도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10.3 신청인은 배상규정 2.3 조에 따라 배상 방안에 대한 등록을 신청한 날 및 그 이후, 그리고 배상 합의를 체결한 날 및 그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피해자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 또는 노출에 관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청구권 또는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청구권을 옥시레킷벤키저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한다.

11 독립적인 법률 자문

11.1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를 수령한 모든 신청인은, 배상 합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법률 비용 상환 신청서 서식을 요청한 뒤 작성된 서식을 법률비용 청구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금 5,000,000 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한도 내에서 배상 방안에 따른 자신의 배상신청과 관련하여 받은 법률 자문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 비용의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11.2 배상신청과 관련된 법률 비용 상환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11.3 신청인에 의해 작성된 법률 비용 상환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배상지원 사무국이 검토한다. 만약 법률 비용 상환 신청서의 일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증빙서류가 누락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정보 및/또는 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11.4 법률 비용 상환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모두 완비된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위 서류들을 수령한 후 14 일 이내에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환 신청된 법률 비용을 배상신청 1 건 당 금 5,000,000 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지정된 은행 계좌로 지급하거나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5 법률 비용 상환 신청서의 일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신청인이 상환을 신청한 법률 비용을 배상신청 1 건 당 금 5,000,000 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없거나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12 결격처리

12.1 배상지원 사무국은 아래의 경우 배상신청을 결격처리 및/또는 중단할 수 있다:

- (a) 관련 신청인이 최초 배상 제안을 받은 후 3 개월이 지나도록 배상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와 같은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e) 배상신청의 대상인 피해자의 선순위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자에 관하여 배상신청을 등록한 경우(이 경우, 배상지원 사무국은 후순위인 신청인에게 해당 피해자의 선순위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등록된 배상신청을 계속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통지하여야 함);
- (f) 배상신청의 대상 피해자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또는 사망에 관하여 옥시레킷벤키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외의 제 3 자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을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된 경우(이 경우 신청인은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단, 신청인이 해당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에 관련 피해자가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g) 관련 신청인이 어느 피해자와 관련하여 배상신청을 한 상황에서, 해당 피해자에 관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청구권 또는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청구권이 배상규정 10.2 조를 위반하여 옥시레킷벤키저가 아닌 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 (h) 관련 신청인이 어느 피해자와 관련하여 배상신청을 한 상황에서, 배상규정 10.3 조 소정의 진술 및 보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진술 및 보증이 어느 시점에서든 진실이 아니게 되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및/또는
- (i) 관련 신청인 및/또는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및/또는 해당 배상신청과 관련된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 또는 그들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이나 전문적인 자문인이 배상 지원 담당자, 전문가 패널 구성원, 배상지원 사무국의 구성원, 레킷벤키저 그룹에 속해있는 회사의 직원 또는 배상 방안의 실행을 돕는 여하한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것으로 위협하는 경우.

12.2 배상규정 12.1 조에 따라 배상신청이 결격처리 된 신청인은 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인은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배상신청은 그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진 날 이후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13 보고

13.1 2018 년 8 월 31 일 이후 첫 분기가 지난 이후, 그리고 이후 규정 13.2 조에 따른 검토 보고서가 공표되기까지 매 분기가 지난 이후, 배상지원 사무국은 직전 분기의 배상 방안 이행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한다. 배상지원 사무국은 각 경과 보고서가 준비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옥시레킷벤키저의 웹사이트(www.rb.com/kr)에 해당 보고서를 게시한다.

13.2 (a) 배상 방안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때; 또는 (b) 2018 년 8 월 31 일 부터 9 개월이 지난 때 중 더 빠른 일자 이후, 전문가 패널은 배상 방안 이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여 배상지원 사무국에 제출한다. 이와 같은 검토 보고서에는 각 경과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 패널의 핵심 수행 요소 분석, 배상 방안의 이행과 관련하여

잘된 부분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한 신청인들의 의견, 배상 방안이 얼마나 그 목적에 맞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가 패널 구성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상지원 사무국은 위 검토 보고서를 전문가 패널로부터 수령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옥시레킷벤키저의 웹사이트(www.rb.com/kr)에 해당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13.3 배상지원 사무국과 배상 지원 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 배상규정 13.2 조에 규정된 검토 보고서의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에게 조력을 제공한다.

13.4 경과 보고서 및 배상규정 13.2 조에 따라 공표된 검토 보고서에는 관련자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배상규정 15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신상 정보를 담지 않는다.

14 잠재적인 향후 배상 방안

옥시레킷벤키저는 향후 조사에서 결정될 1 단계 및 2 단계 옥시 가슴기 살균제 사용자를 위한 잠재적인 배상 방안과 관련하여 제안할 점들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번 배상 방안과 관련하여 작성된 경과 보고서 및 복수제품 사용자 문제에 관한 관련 산업 내의 전반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을 참작하여 어떠한 규정이 잠재적인 배상 방안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할 것이다.

15 비밀유지 의무

옥시레킷벤키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취급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 나아가 배상 방안의 이행과 관련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선임한 제 3의 자문인들 역시 모두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6 본 배상규정의 변경

16.1 배상규정 16.2 조부터 16.4 조까지의 제한 내에서, 옥시레킷벤키저는 언제든지 당사의 재량으로 본 배상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히 4 차 조사에서 적용된 1 단계 및 2 단계 판정기준이 개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판정기준이 제 1 차 조사 내지 제 3 차 조사에 적용된 판정기준과 다를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개정 또는 변경된 판정기준을 반영하여 본 배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16.2 옥시레킷벤키저가 본 배상규정을 중대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피해자,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그와 같은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그와 같이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된 대로 변경 사항을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 사항에 다시 수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하여 해당 변경 사항을 당사의 웹사이트(www.rb.com/kr)에 게시한다.

16.3 본 배상규정의 모든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존에 체결된 배상 합의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6.4 본 배상규정의 변경이 전문가 패널 구성원이 자신의 지위와 관련하여 취해야 하는 행동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그러한 변경을 하기 전에 전문가 패널 구성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본 배상규정의 지위

본 배상규정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본 배상규정에 따른 배상 제안은 신청인, 옥시레킷벤키저, 기타 어느 제 3 자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단순한 제안으로서, 본 배상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체의 지급을 위해서는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별표 3 에 규정된 배상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경우에도 배상규정 5 조에 따른 배상 합의가 체결된 경우에 한해 그 지급이 이루어진다.

18 준거법

본 배상규정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규율된다.

19 기타 조항

19.1 본 배상규정에는 별표 1 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 및 해석 방법이 적용된다.

19.2 본 배상규정은 본 배상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 배상 방안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담고 있다. 본 배상규정은 그 배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 함축하고 있는 여하한 조건들을 모두 배제하며, 이전에 발표된 배상규정 및 본 배상규정이 규정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 그룹의 구성원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에 우선한다.

19.3 배상규정 11 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신청의 진행 및 배상 합의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19.4 본 배상규정에 의한 모든 지급은 원화로 이루어진다.

별표 1 용어 및 해석

2 용어

본 배상규정 내에서:

“**1 단계**”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과 폐 손상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능성 확실” 또는 “가능성 거의 확실”로 판정한 사람들의 단계를 의미한다;

“**2 단계**”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과 폐 손상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 사람들의 단계를 의미한다;

“**1 차 조사 내지 3 차 조사 피해자**”는 1 차 조사, 2 차 조사 또는 3 차 조사에서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를 의미한다.

“**1 차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2013 년 7 월부터 2014 년 3 월까지 수행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폐질환 및 사망 사례에 대한 1 차 조사를 의미한다;

“**2 차 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해 2014 년 7 월부터 2015 년 4 월까지 수행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폐질환 및 사망 사례에 대한 2 차 조사를 의미한다;

“**3 차 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해 2016 년부터 2017 년 8 월까지 수행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폐질환 및 사망 사례에 대한 3 차 조사를 의미한다;

“**4 차 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6 년 4 월 및 그 이후 조사를 신청한(혹은 신청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7 년 8 월부터 수행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폐질환 및 사망 사례에 대한 4 차 조사를 의미한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관련된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가 아닌 가습기 살균제 또는 그 원료의 제조업체, 판매업체, 공급업체, 또는 그 밖의 제 3 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연금운용기관 포함)로부터 받은 배상을 의미한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또는 노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구성원이 옥시레킷벤키저 외에 다른 사람(법인 포함)에게 갖는 배상청구권을 의미한다;

“**가족**”은 피해자의 배우자(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그밖에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의미한다;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은 별표 2 제 1 부의 5 조에 규정된 상황 하에서 총 50,000,000 원의 금액 중 각각의 배상신청에 대해 지급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개인 정보**”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경과 보고서**”는 별표 8 에 규정된 서식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미한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별표 2 제 1 부의 3.3(c)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노동능력 상실률 결정 기준”은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손해배상 사건의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의학적 기준 재정립 연구 보고서에 규정된 기준을 의미한다;

“대리인”은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자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대리할 권한이 위임장에 의해 증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의학회 보고서”는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사업 보고서의 의미를 의미한다;

“레킷벤키저 그룹”은 Reckitt Benckiser Group plc 및 그 지배하에 있는 다른 법인들을 의미한다;

“문답서”는 신청인이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를 수령한 이후 신청인에게 제공되어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문답서를 의미한다;

“배상 공식”은 별표 2 에 규정된 배상 공식을 의미한다;

“배상규정”은 본 문서에 규정된 배상 방안의 규정들을 의미한다;

“배상 방안”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해 수행된 4 차 조사에서 2019 년 4 월 5 일 또는 그 이전에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을 위해 수립한 배상 방안으로서 본 배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배상 방안을 의미한다;

“배상신청”은 본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신청을 의미한다;

“배상신청 접수확인 통지”는 신청인에게 본 배상 방안 2 조에 따른 그들의 배상신청 등록이 옥시레킷벤키저에 의해 접수되었다는 점을 고유의 신청번호와 함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상적격 비용”은

- (1) 아래 (2)항의 적용을 전제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피해자의 폐 상태로 인해 피해자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어떠한 비용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해당 비용이 자동적으로 본 배상 방안에 따라 배상되는 종류의 비용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함); 및/또는
- (2) 어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6,000,000 원을 최대금액으로 하는 장례비용(동 최대금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이미 상환된 금액만큼 감액됨)

“배상 제안”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별표 4 에 규정된 배상 제안(안)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제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안을 의미한다;

“배상 제안금”은 별표 2 제 1 부에 규정된 배상 공식에 따라 산출되어 제안된 금액을 의미한다;

“배상 지원 담당자”는 배상규정 1.1 조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배상지원 사무국”은 배상규정 1.2 조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는 배상지원 사무국을 이끌어 갈 자로 옥시레킷벤키저가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배상 합의**”는 별표 5 에 규정된 합의(안)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합의를 의미한다;

“**법률 비용 상환 신청서**”는 배상규정 11 조에 따라 신청인이 그들의 배상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한 법률 비용의 상환을 신청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서식을 의미한다;

“**수입의 현재 가치**”는 별표 2 제 1 부의 3 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신청번호**”는 특정한 배상신청에 대해 배상 지원 사무국이 부여하고 배상 지원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의미한다;

“**신청인**”은 배상규정 2.1 조에 규정된 자를 의미한다.

“**어른**”은 어린이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어린이**”는 최초 진단일 당시 만 19 세 미만이었던 자를 의미한다;

“**옥시 가슴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가 “옥시썩썩 가슴기당번”이라는 제품명으로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하여 생산하여 출시한 가슴기 살균제 제품을 의미한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를 의미한다;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가 기존에 지급한 배상금에서 해당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해결된 법적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법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원**”또는“**KRW**”또는“**₩**”은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을 의미한다;

“**인증 의료인**”은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라 2 차 의료기관 또는 3 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폐기능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일실 수입**”은 별표 2 의 3 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잠정 D 그룹 통지**”는 별표 3 의 4.1 조에 따른 통지로서, 배상지원 사무국에 제공된 정보에 근거할 때 피해자가 D 그룹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잠정 지원금**”은 50,000,000 원의 금액을 의미한다;

“**잠정 지원금 신청서**”는 배상규정 8 조에 따라 신청인이 잠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서식을 의미한다;

“**전문가 패널**”은 배상규정 1.3 조에 규정된 패널을 의미한다;

“**전문가 패널 구성원**”은 전문가 패널에 선임된 자를 의미한다;

“**전문가 패널 선임 조건**”은 전문가 패널 구성원과 체결된 합의로서, 해당 전문가 패널 구성원이 전문가 패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진신장애율**”은 별표 3 의 3 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피해자의 진신장애율을 의미한다;

“**중대한 부정적 변경**”은 배상규정 9.2 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를 의미한다;

“**태아피해 인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태아피해를 인정 받은 것을 의미한다.

- (1)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로서 그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 (2)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하여 생존하여 출생하였으나 이후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과관계 통지서**”는 4 차 조사에서 판정된 피해자의 단계를 관련 피해자(또는 당시 관련 피해자를 대리하는 자)에게 통지한 문서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행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 지원계획 안내”를 의미한다;

“**최초 진단일**”은 피해자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밝혀진 (진단 시점에 밝혀졌던 그 후에 밝혀졌던 불문함) 폐 손상을 피해자가 인증 의료인으로부터 처음 진단 받은 날을 의미한다(다만, 인증 의료인이 아닌 의사가 피해자의 해당 폐 손상을 처음 진단하고, 그 후 인증 의료인에 의해 그러한 진단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 의료인이 아닌 원래의 의사가 폐 손상을 처음 진단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본다). 단, 태아피해 인정을 받은 사망 피해자의 경우 그 출생일을 의미한다;

“**폐기능 검사**”는 폐활량측정 및 폐확산능력측정(예컨대 DL_{co} 검사)의 조합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한 4 차 조사에서 2019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를 의미한다.

(단, 1 차 조사 내지 3 차 조사 피해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민국의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서 건강의 증진, 안전 및 환경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의미한다;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은 옥시레킷벤키저와의 배상 합의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피해자의 폐 상태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을 의미한다,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 및/또는
- (2) 기타 피해자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및 간병, 각종 의료소모품 및 장비에 관한 비용;

“**호프만 수치**”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일실수입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하는 곱셈 수치를 의미한다;

“**A 그룹 피해자**”는 진신장애율이 61% 부터 75% 사이로 평가된 피해자 또는 별표 2 제 1 부 2.1.2 조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의미한다;

“**B 그룹 피해자**”는 진신장애율이 16% 부터 60% 사이로 평가된 피해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C 그룹 피해자”는 전신장애율이 0% 부터 15% 사이로 평가된 피해자로서 D 그룹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은 피해자를 의미한다.

“D 그룹 피해자”는 별표 3의 4 조에 따라 “D 그룹”으로 평가된 피해자를 의미한다.

3 본 배상규정의 해석 방법

3.1 본 배상규정은,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원칙에 따라 해석된다:

- (a) 본 배상규정의 인용은 본 배상규정의 별표, 별표에 딸린 부록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본 배상규정과 그 조항, 별표 및 부록의 인용은 본 배상규정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며, 본 배상규정과 그 조항, 별표 및 부록의 표제는 인용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 (a) 본 배상규정을 포함하여 어떠한 문서 또는 문서 내의 조항이 인용된 경우, 해당 문서 또는 조항이 개정, 보충, 변경, 수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개정, 보충, 변경, 수정된 상태로 인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b) 단수의 사용은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성별을 표시하는 단어는 다른 성별도 포함하는 것으로, 자연인을 표시하는 단어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c)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 (d) 본 배상규정의 해석 기준이 되는 언어는 한국어이다;
- (e) “일”, “월”, “분기”, 또는 “년”은 달력상의 일, 월, 분기 또는 년을 의미한다
- (f) 본 배상규정에서 나이나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한다; 그리고
- (g) “포함한다”, “포함하여”, “포함되는”, “특히”와 같은 표현과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 그와 같은 표현에 선행되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2 만약 본 배상규정의 조항과 옥시레킷벤키저와 각각의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배상 합의의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경우, 배상 합의의 조항이 우선한다.

별표 2 배상 공식

본 별표 2는 배상 방안에 따라 배상금을 산출하는 데 적용되는 배상 공식을 규정한다.

제 1 부 배상 제안금의 산출

1 사망 피해자의 경우

1.1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어린이이고 사망한 경우, 배상 제안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a) 정신적 고통, 가족 위로 및 어린이의 잠재적 가능성, 총 배상적격 비용, 일실수입 및 이상에 대한 단리 이자를 위한 금 1,000,000,000 원;
- (b) 더하기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 (c) 더하기 본 별표 2의 6조에 따라 산출되는 법률 비용;
- (d) 빼기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 (e) 빼기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f) 빼기 잠정 지원금.

1.2 어른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어른이고 사망한 경우, 배상 제안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a) 정신적 고통 및 가족 위로를 위한 금 350,000,000 원;
- (b) 더하기 총 배상적격 비용 상당액;
- (c) 더하기 본 별표 2의 3조에 따라서 산출한 일실수입의 총액;
- (d) 더하기 본 별표 2의 4조에 따라서 산출한 이자(단리 연 5% 적용)의 총액;
- (e) 더하기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 (f) 더하기 본 별표 2의 6조에 따라 산출되는 법률 비용;
- (g) 빼기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 (h) 빼기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i) 빼기 잠정 지원금.

2 생존 피해자의 경우

2.1 의료검사

2.1.1 아래 2.1.3의 제한 내에서, 피해자가 배상신청 시점에 생존해 있는 경우, 배상규정 별표 3의 4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D 그룹 피해자”로 분류한다.

2.1.2 아래 2.1.3.조의 제한 내에서, 피해자가 배상신청 시점에 생존해 있고 위 2.1.1 조에 따라 “D 그룹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배상규정 별표 3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전신장애율을 기초로 피해자를 “A 그룹 피해자”, “B 그룹 피해자” “C 그룹 피해자”로 분류한다.

2.1.3 위 2.1.1.조 및 2.1.2.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폐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사로부터 폐 이식 수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료 소견을 받은 경우, 그 피해자는 자동적으로 A 그룹 피해자로 분류된다.

2.2 A 그룹 피해자인 어린이의 경우

2.2.1 본 별표 2 제 1 부 2.2.2.조의 제한 내에서, 배상신청 시점에 생존한 피해자 중 어린이가 A 그룹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 배상 제안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a) 정신적 고통, 가족 위로 및 어린이의 잠재적 가능성, 총 배상적격 비용, 일실수입 및 이상에 대한 단리 이자를 위한 금 1,000,000,000 원;
- (b) 더하기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 (c) 더하기 본 별표 2의 6 조에 따라 산출되는 법률 비용;
- (d) 빼기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 (e) 빼기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f) 빼기 잠정 지원금.

해당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에 관하여는 본 별표 2의 제 2 부가 적용된다.

2.2.2 피해자에게 어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별표 2 제 1 부의 2.3 조를 적용하였을 때 배상 제안금이 1,000,000,000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출될 경우, 그 높은 금액을 해당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제안금으로 한다.

해당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에 관하여는 본 별표 2의 제 2 부가 적용된다.

2.3 A 그룹 피해자인 어른의 경우

배상신청 시점에 생존한 피해자 중 어른이 A 그룹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 배상 제안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a) 정신적 고통 및 가족 위로를 위한 금 350,000,000 원;
- (b) 더하기 총 배상적격 비용 상당액;
- (c) 더하기 본 별표 2의 3 조에 따라서 산출한 일실수입의 총액;
- (d) 더하기 본 별표 2의 4 조에 따라서 산출한 이자(단리 연 5% 적용)의 총액;
- (e) 더하기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 (f) 더하기 본 별표 2의 6 조에 따라 산출되는 법률 비용;
- (g) 빼기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 (h) 빼기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i) 빼기 잠정 지원금.

해당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에 관하여는 본 별표 2의 제 2 부가 적용된다.

2.4 B 그룹 피해자인 어린이의 경우

배상신청 시점에 생존한 피해자 중 어린이가 B 그룹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 배상 제안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a) 정신적 고통 및 가족 위로를 위한 금 200,000,000 원;
- (b) 더하기 총 배상적격 비용 상당액;
- (c) 더하기 본 별표 2의 3 조에 따라서 산출한 일실수입의 총액;
- (d) 더하기 본 별표 2의 4 조에 따라서 산출한 이자(단리 연 5% 적용)의 총액;
- (e) 더하기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 (f) 더하기 본 별표 2의 6 조에 따라 산출되는 법률 비용;
- (g) 빼기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 (h) 빼기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i) 빼기 잠정 지원금.

해당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에 관하여는 본 별표 2의 제 2 부가 적용된다.

2.5 B 그룹 피해자인 어른의 경우

배상신청 시점에 생존한 피해자 중 어른이 B 그룹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 배상 제안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a) 정신적 고통 및 가족 위로를 위한 금 200,000,000 원;
- (b) 더하기 총 배상적격 비용 상당액;
- (c) 더하기 본 별표 2의 3 조에 따라서 산출한 일실수입의 총액;
- (d) 더하기 본 별표 2의 4 조에 따라서 산출한 이자(단리 연 5% 적용)의 총액;
- (e) 더하기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 (f) 더하기 본 별표 2의 6 조에 따라 산출되는 법률 비용;
- (g) 빼기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 (h) 빼기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i) 빼기 잠정 지원금.

해당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에 관하여는 본 별표 2의 제 2 부가 적용된다.

2.6 C 그룹 피해자인 어린이의 경우

배상신청 시점에 생존한 피해자 중 어린이가 C 그룹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 배상 제안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a) 정신적 고통 및 가족 위로를 위한 금 150,000,000 원;
- (b) 더하기 총 배상적격 비용 상당액;
- (c) 더하기 본 별표 2 의 3 조에 따라서 산출한 일실수입의 총액;
- (d) 더하기 본 별표 2 의 4 조에 따라서 산출한 이자(단리 연 5% 적용)의 총액;
- (e) 더하기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 (f) 더하기 본 별표 2 의 6 조에 따라 산출되는 법률 비용;
- (g) 빼기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 (h) 빼기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i) 빼기 잠정 지원금.

해당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에 관하여는 본 별표 2 의 제 2 부가 적용된다.

2.7 C 그룹 피해자인 어른의 경우

배상신청 시점에 생존한 피해자 중 어른이 C 그룹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 배상 제안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a) 정신적 고통 및 가족 위로를 위한 금 150,000,000 원;
- (b) 더하기 총 배상적격 비용 상당액;
- (c) 더하기 본 별표 2 의 3 조에 따라서 산출한 일실수입의 총액;
- (d) 더하기 본 별표 2 의 4 조에 따라서 산출한 이자(단리 연 5% 적용)의 총액;
- (e) 더하기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 (f) 더하기 본 별표 2 의 6 조에 따라 산출되는 법률 비용;
- (g) 빼기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 (h) 빼기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i) 빼기 잠정 지원금.

해당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에 관하여는 본 별표 2 의 제 2 부가 적용된다.

2.8 D 그룹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D 그룹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 배상 제안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a) 정신적 고통, 가족 위로, 총 배상적격 비용, 일실수입 및 이상에 대한 단리 이자를 위한 금 75,000,000 원;
- (b) 더하기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 (c) 더하기 본 별표 2 의 6 조에 따라 산출되는 법률 비용;

- (d) 빼기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 (e) 빼기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f) 빼기 잠정 지원금.

다만, (a)부터 (f)까지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음수(-)인 경우, 배상 제안금은 0 원으로 한다.

해당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에 관하여는 본 별표 2의 제 2 부가 적용된다.

3 일실수입

배상 공식은 일실수입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장래 일실수입의 현재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호프만 방식”을 사용한다.

3.1 어른이 사망한 경우 – 직업이 있는 피해자

피해자가 어른이고 직업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a) 수입의 현재 가치 = (월 소득) x (HFA):

HFA는 최초 진단일 당시 피해자의 연령으로부터 퇴직시(만 60 세로 추정)까지의 개월 수에 상응하는 호프만 수치를 의미한다.

- (a) 사망의 경우, “일실수입”은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가상의 생계비 33.33%를 공제하여 산정되나, 그러한 생계비 공제는 최초 진단일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일실수입} = (\text{월 수입}) \times \{(\text{HFA} - \text{HF}_B) (1 - 0.3333) + \text{HF}_B\}$$

HF_B는 최초 진단일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에 상응하는 호프만 수치를 의미한다.

3.2 어른이 사망한 경우 – 직업이 없는 피해자

피해자가 어른이고 직업이 없었던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a) 수입의 현재가치 = (추정된 월 소득) x (HFA):

- (i) 직업이 없던 자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 임금 조사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통상근로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 (ii) HFA는 최초 진단일 당시 피해자의 연령으로부터 퇴직연령인 60 세까지의 개월 수에 상응하는 호프만 수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 (b) 사망의 경우, “일실수입”은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가상의 생계비 33.33%를 공제하여 산정되나, 그러한 생계비 공제는 최초 진단일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일실수입} = (\text{추정된 월 수입}) \times \{(\text{HFA} - \text{HF}_B) (1 - 0.3333) + \text{HF}_B\}$$

HF_B는 최초 진단일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에 상응하는 호프만 수치를 의미한다.

3.3 B 그룹 및 C 그룹 피해자인 어린이의 경우, A 그룹, B 그룹 및 C 그룹 피해자인 어른의 경우 – 직업이 있는 피해자 및 직업이 없는 피해자

(a) B 그룹 및 C 그룹 피해자인 어린이의 경우, 수입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수입의 현재가치 = (추정된 월 수입) x (HF_A - HF_B):

- (i) 어린이는 무직자로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 임금 조사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통상근로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 (ii) HF_A는 최초 진단일 당시 피해자의 연령으로부터 예상 퇴직연령인 만 60세까지의 개월 수에 상응하는 호프만 수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 (iii) HF_B는 최초 진단일 당시 피해자의 연령으로부터 만 19세(여성) 또는 만 20세 9개월(남성)까지의 개월 수에 상응하는 호프만 수치를 의미한다.

(c) A 그룹, B 그룹, C 그룹 피해자인 어른의 경우, 수입의 현재가치는 본 별표 2의 3.1 조(직업이 있는 피해자) 및 3.2 조(직업이 없는 피해자)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단, 가상의 생계비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d) 본 3.3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별표 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단, 피해자가 입원을 하는 등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00%로 평가한다.

(e) 본 3.3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일실수입 = 수입의 현재가치 x 노동능력 상실률.

4 이자

배상 제안금의 다음 요소들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법정이율인 연 5%의 단리 이자가 지급되고, 이러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각각의 이자는 배상 제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함):

- (a) 정신적 고통, 어린이의 잠재적 가능성 및 가족 위로: 이에 대한 이자는 최초 진단일부터 기산한다;
- (b) 배상적격 비용: 이에 대한 이자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 (c) 일실수입: 이에 대한 이자는 최초 진단일부터 기산한다.

5 가족 내에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5.1** 본 배상 방안에 따라 한 가족 내 2명 이상의 피해자에 관해 배상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가족에 대한 배상 제안금에는 금 50,000,000 원이 추가되며, 이 금액은 해당 가족 내 각각의 피해자에 관한 배상신청에 대해 균분하여 지급된다.
- 5.2** 본 배상 방안에 따라 한 가족 내 1명 이상의 피해자에 관해 배상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 5.2.1** 가족 내 1명 이상의 1차 조사 내지 3차 조사 피해자에 관하여 1차 조사 및 2차 조사 피해자들 또는 3차 조사 피해자 및 태아피해자들을 위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 5.2.2** 가족 내 1명 이상의 1차 조사 내지 3차 조사 피해자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또는 사망에 관하여 옥시레킷벤키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외의 제 3자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을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된 경우에는,
- 5.2.3**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1차 조사 내지 3차 조사 피해자들을 위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이 이미 해당 1차 조사 내지 3차 조사 피해자에게 지급된 경우, 본 5조에 따른 추가 배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하고;
- 5.2.4**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1차 조사 및 2차 조사 피해자들 또는 3차 조사 피해자 및 태아피해자들을 위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이 해당 1차 조사 또는 2차 조사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금 50,000,000 원이 본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 신청에 대한 배상 제안금에 추가된다(단, 해당 가족 내에 2명 이상의 피해자에 관하여 본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금 50,000,000 원의 추가 배상금은 해당 가족 내 각각의 피해자에 관한 배상신청에 대해 균분하여 지급됨).

6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소송 관련 법률 비용

관련 배상신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그와 같은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이 법률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6.1** 배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인해 피해자(또는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가 2016년 5월 2일 이전에 제기한 소송에 관한 계약에 따라 법률 비용(성공보수를 포함함)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배상 제안금은 그러한 법률 비용(부가가치세 및 관련 부대비용을 포함함)만큼 증액된다; 그리고
- 6.2** 피해자(또는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가 다음 각 항에 따른 날짜 이전에 제공받은 법률 서비스에 관하여 법률 비용(성공보수는 제외함) 지급 기한이 도래한 경우, 배상 제안금은 해당 법률 비용(부가가치세 및 관련 부대비용을 포함함)만큼 증액된다.
- 6.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8년 7월 12일 또는 그 이전에 피해자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2018년 8월 9일
- 6.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9년 4월 5일 피해자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2019년 4월 30일

6.2.3

7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및/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7.1 피해자가 배상 제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및/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 제안금은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및/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의 금액만큼 감액된다.

7.2 피해자가 배상 제안을 수락한 이후 배상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및/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 합의에서 정하는 배상금은 해당 피해자가 받은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및/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의 금액만큼 감액된다.

8 잠정 지원금

피해자가 배상 제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배상 제안금은 잠정 지원금만큼 감액된다.

9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 차 조사에서 2019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경우, 본 별표 2 제 1 부의 7 조에 따른 공제를 제외하고는, 해당 피해자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외에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배상 제안금을 할인하거나 감액하지 않는다.

제 2 부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에 대한 제안

배상신청 당시 생존한 피해자의 경우, 해당 피해자와 관련한 배상 제안에는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의 제공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이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다.

별표 3 필수 그룹 판정

1 개요

- 1.1 생존 피해자의 일일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전신장애율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결정하여야 한다(별표 2 제 1 부의 3.3(c)조 참조).
- 1.2 본 별표 3 은 배상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전신장애율 및 노동능력 상실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규정한다.

2 폐기능 검사

- 2.1 첫 번째 단계는 최근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폐 기능 검사 결과를 얻는 것이다. 배상 방안의 목적 상 이와 같은 검사는 두 가지 측면의 폐 기능을 측정하는 두 개의 검사로 구성된다:

(a) 폐활량측정:

- (i) FVC (노력성 폐활량); 및
- (ii) FEV1 (1 초간 노력성 호기량); 및

(b) 폐확산능력측정 (즉, DLco (일산화탄소 폐확산능력검사)).

- 2.2 피해자가 배상규정 2 조에 따른 배상신청 등록 전 12 개월 이내에 인증 의료인이 수행한 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의료 기록을 제시하는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그와 같은 의료 기록에 기초하여 전신장애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 있고, 해당 피해자는 인증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인증 의료인에게 폐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전신장애율과 노동능력 상실률

- 3.1 배상지원 사무국 소속 의료 전문가는 폐 기능 검사의 결과(기존 의료 기록이나 별도의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 포함)를 검토하고, 대한의학회 보고서에 규정된 관련 표를 참고하여 피해자의 전신장애율을 결정한다:

- 3.2 본 별표 3 의 4 조의 우선 적용을 전제로, 피해자의 전신장애율(또는 별표 2 제 1 부 2.1.2 조)을 기초로,

3.2.1 A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그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00%로 본다.

3.2.2 B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그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노동능력 상실률 결정 기준에 규정된 관련 표를 참고하여 산정된다. 그에 따라 배상지원 사무국은 아래의 사항을 결정한다:

- (a) 피해자의 장애분류;
- (b) 피해자의 직업군 분류;
- (c) 피해자의 장애분류 및 직업군 분류에 기초한 피해자의 직업계수; 및
- (d) 피해자의 직업계수 및 전신장애율에 기초한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3.2.3 C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그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20%로 본다.

3.3 배상지원 사무국이 소속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어느 피해자에 대해 폐 기능 검사, 전신장애율 및/또는 노동능력 상실률 결정에 있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상 지원 담당자가 신청인과 협의하며,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는 전문가 패널과 협의하여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의 경우 폐활량 검사에 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일산화탄소 폐확산능력검사도 대체로 받지 않았거나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중호흡유실(Multiple Breath Washout, "MBW") 검사 등 다른 폐 기능 검사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MBW 검사가 이미 이루어진 바 없다면, (배상지원 사무국 소속 의료 전문가의 소견상) 해당 검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4 D 그룹

4.1 배상지원 사무국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잠정 D 그룹 통지를 한다:

4.1.1 피해자에 대한 고해상 전산화단층촬영(HRCT) 또는 X-ray 영상(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피해자의 폐에 어떠한 이상 징후나 소견이 없는 경우;

4.1.2 피해자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경우(즉,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i) DL_{co}의 경우 70%;

(ii) FEV1의 경우 70%;

(iii) FVC의 경우 70%.

4.1.3 피해자의 과거 의료기록에서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임상적 양상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

(i)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생긴 호흡곤란, 기침, 또는 호흡부전 증상; 또는

(ii) 기흉, 피하기종 등의 폐압력 손상 소견

4.2 신청인이 잠정 D 그룹 통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상기 4.1.1 부터 4.1.3 에 규정된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D 그룹으로 분류된다.

별표 4 배상 제안서(안)

본 문서는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지원 사무국이 낱자 기재]에 [배상지원 사무국이 신청인의 이름 기재]에게 드리는 배상 제안입니다. 본 배상 제안은 [귀하의 가슴기 살균제 관련 상해]/[가슴기 살균제 관련 [배상지원 사무국이 피해자의 이름 기재]의 [상해/사망]]과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가 제안 드리는 배상액과 그러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배상 제안을 보시고,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배상 제안은 귀하나 옥시레킷벤키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단순한 제안입니다. 귀하께서 배상규정 5 조에 따라 배상 합의서에 서명을 하시는 경우에 한해 귀하와 옥시레킷벤키저 간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체결됩니다.

본 배상 제안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귀하의 배상 지원 담당자 [배상지원 사무국이 배상 지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피해자 성명(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신청번호

총 배상 제안 금액:

배상 제안액 ([잠정 지원금],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공제 전)

배상 제안액 ([잠정 지원금], [가슴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공제 후)

아래는 [귀하/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 제공에 대한 제안입니다. **[해당 없을 경우 삭제]**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은 옥시레킷벤키저와의 배상 합의 이후에 가슴기 살균제와 관련한 피해자의 폐 상태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 및/또는

(2) 피해자가 (1) 외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및 간병, 각종 의료소모품 및 장비에 관한 비용

배상 제안 명세

배상 제안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

위자료

과거의 치료비 및 간병비 ₩.....

[장례비]* (해당 없는 경우
삭제) [₩.....]

기타 과거에 지출한 비용 ₩.....

일실수입 ₩.....

과거 항목에 대한 이자 ₩.....

법률비용 ₩.....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해당 없는 경우
삭제) ₩.....

**배상 제안금 ([잠정 지원금],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공제 전)** [₩.....]

[귀하는 잠정 지원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지급받으신 (혹은
지급받으실) 위 금액을 총
배상 제안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귀하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지급받으신 위 금액을 총
배상 제안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귀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을 받으셨습니다
(또는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지급받으신 (혹은
지급받으실) 위 금액을 총
배상 제안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총 배상 제안금([잠정 ₩.....
지원금],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
[옥시레킷벤키저의 합의금]
공제 후)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 배상 제안

만약 귀하께서 옥시레킷벤키저와 배상 합의를 체결하신다면, 해당 배상 합의에는 [귀하의/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 비용 제공에 관한 제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별표 5 배상 합의서(안)

본 배상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20____. ____ . ____ .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 (1)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4 층(여의도동, 투아이에프씨) (우편번호: 07326)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 (이하 “옥시레킷벤키저”); 및
- (2)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_____) (이하 “신청인”).

이하에서 옥시레킷벤키저와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 (A) 2011년에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는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특정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특정 사용자가 입은 폐 손상 또는 사망 등의 건강 문제가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이하 “가습기 살균제 사건”).
- (B) 2016년 5월 2일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원인을 제공한 점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서둘러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인하여 폐 손상을 입은 모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질병관리본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한 1차 조사 및 2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을 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8년 8월 31일 옥시레킷벤키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8년 7월 12일 또는 그 이전에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을 위한 추가 배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C) 2018년 옥시레킷벤키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8년 7월 12일 또는 그 이전에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을 위한 배상 방안(이하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을 수립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2019년 4월 30일 옥시레킷벤키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9년 4월 5일에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에게도 가습기 살균제 배상방안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은 그와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가 공표한 일련의 규정들(이하 “배상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 (D) 신청인은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초래된 **[배상청구권의 근거 내지 신청인/피해자(이하 “피해자”)의 손해 기재(예.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피해자의 사망” 또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해(폐 섬유화증 포함)]**(이하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배상신청 등록을 하였고, 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옥시레킷벤키저는 신청인에게 배상 제안을 하였다.
- (E) 신청인은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 제안을 수용하였다.
- (F) 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그밖에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이하 “피해자 가족”)이 갖는 일체의 청구권, 법적 권리 및 책임에 관해 완전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합의를 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합의한다.

1 완전하고 종국적인 해결

- 1.1 [옥시레킷벤키저는 [날짜기췌]에 배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른 잠정 지원금 금 50,000,000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거나 그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 1.2 옥시레킷벤키저는 신청인에게 총 []원(제반 비용, 수수료,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임, 이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한다.
- 1.3 옥시레킷벤키저는 본 배상 합의 이후에 가슴기 살균제와 관련한 피해자의 폐 상태의 예측 가능한 결과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 및/또는 기타 피해자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및 간병, 각종 의료소모품 및 장비에 관한 비용을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는 본 배상 합의 체결일 이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신청인에게 본 제 1.3 조에 따른 상환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된 정보 및 기타 필요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피해자에 한해 계약 조항에 포함됨]**
- 1.4 옥시레킷벤키저가 제 1.1 조,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규정된 금액 및 급부를 지급, 제공하거나 그 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청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및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전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혹은 이 사건 사고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하여 가지게 된 일체의 청구권은 완전하고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 1.5 옥시레킷벤키저는 신청인이 서명한 배상 합의서를 수령한 후 십사(14)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책임 등의 면제

배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그리고 피해자 가족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그리고 이들 모두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혹은 이 사건 사고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하여 그들이 옥시레킷벤키저와 그 계열회사, 자회사, 주주 및 연결회사, 그리고 이들의 각 대리인, 피용자, 임원, 이사, 하청회사,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총칭하여 “**피면제자**”)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청구권, 소권 및 청구원인 등을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포기하고 피면제자의 책임을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3 건강 상태의 중대한 부정적 변경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 3.1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오(5)년 이내에 가슴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폐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은 관련 의료기록 및 필요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옥시레킷벤키저에게 배상액을 재검토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3.2 제 3.1 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부정적 변경”은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에 기인한 관련 피해자의 사망 또는 배상규정 별표 3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폐 기능 저하를 감안함) 피해자의 전신장애율이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20% 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3.3**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부터 제 3.1 조에 따른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본 합의서 체결 시점의 배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공식을 적용하여 (단, 이자의 계산은 적용하지 않음) 배상액을 검토한다. 만약 그와 같은 검토 결과 본 합의서에서 정한 배상액보다 더 큰 배상액이 산출되면,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장래 청구권의 포기

본 합의서의 체결로써 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그리고 피해자 가족 구성원 전원을 위해, 그리고 이들 모두를 대신하여:

- 4.1**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신청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또는 피해자 가족 구성원들이 피면제자 또는 피면제자의 개별적인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 소권 및 청구원인 등을 포기한다;
- 4.2**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신청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또는 피해자 가족 구성원이 [날짜]에 [법원명]에 제기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종국적으로 취하하고, 본 합의서 체결일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그와 같은 취하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제공한다];
- 4.3** 어떠한 관할 지역에서도 위에서 명시된 사항으로 인하여 혹은 그와 관련하여 제 3 자가 피면제자에 대하여 여하한 소송 절차, 법적 청구, 법적 조치, 요청, 또는 손해 및 비용의 보전을 구하는 경우, 그 제 3 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조력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5 비밀유지의무 등

배상규정 제 13 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옥시레킷벤키저는 미디어를 포함한 제 3 자에 대하여 본 합의서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옥시레킷벤키저는 (i)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ii) 자신의 자문인이나 대리인,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게; (iii) 배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가 패널에게; 또는 (iv) 신청인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신청인은 그와 같은 동의를 불합리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자에게 본 합의서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6 진술 및 보증; 확약

- 6.1**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진술 및 보증한다:
- 6.1.1** 신청인은 아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기재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다;
- 6.1.2** 신청인이 문답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공한 정보는 신청인이 알고 있는 한 진실하다;
- 6.1.3** 신청인은 피해자 및/또는 피해자 가족 구성원 전원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이들을 대신하여 본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며, 신청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또는 피해자 가족 구성원 각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혹은 이 사건 사고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하여 그들이 갖게 되는 일체의 배상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해 본 합의서가 체결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6.1.4 신청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또는 피해자 가족 구성원 각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혹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지는 청구권은 옥시레킷벤키저 외의 제 3자에게 양도된 바 없다.

6.2 본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그리고 피해자 가족 구성원 전원을 위해 그리고 이들 모두를 대신하여, 신청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그리고 피해자 가족 구성원 각각이 아래 표에 기재된 제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또는 그 원료의 제조업체, 판매업체, 공급업체(단, 피면제자는 제외)를 상대로 가지는 일체의 청구권을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되게 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신청인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조사한 결과 밝혀진 내용으로서][**사례별로 적절한 삽입/수정 필요**], 신청인은 옥시레킷벤키저에게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진술 및 보증한다.

[배상지원 사무국 기재]

[제품명]	피해자에 의하여 []% 사용됨.
[제품명]	피해자에 의하여 []% 사용됨.
[제품명]	피해자에 의하여 []% 사용됨.
[...]	[...]

6.3 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그리고 피해자 가족 구성원 전원을 위해 그리고 이들 모두를 대신하여, 제 6.2 조에 기재된 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본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그리고 피해자 가족 구성원 전원을 위해, 그리고 이들 모두를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옥시레킷벤키저에게 부여한다. 신청인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제 6.2 조에 따라 양도되는 청구권과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또는 그 원료의 제조업체, 판매업체, 공급업체를 상대로 양도 받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제공하는 등 옥시레킷벤키저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조력을 제공하고, 그 절차에 협력한다.

7 준거법 및 관할

본 합의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본 합의서로 인해 발생하거나,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

- 첨부 서류:**
1. 신청인 개인 인감 증명서.
 2.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3. 옥시레킷벤키저의 대표이사과 RB Group plc의 CEO의 사과문

이상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상기 날짜에 본 합의서 원본 두(2) 부에 각각 서명하고, 각 당사자가 한 부씩 보관한다.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를 위해,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를 대표하여 아래 서명함)

성명:

직위:

[신청인의 성명]

(신청인 본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그리고 피해자 가족 구성원 전원을 위해, 이들 모두를 대신하여 아래 서명 날인함)

_____ (인)

성명:

피해자와의 관계:

별표 6 전문가 패널

제 1 부 전문가 패널의 설치

1 선임 및 구성

1.1 전문가 패널은 최소 3 인으로 구성된다:

- (a) 최소 1 인의 의료 전문가; 및
- (b) 최소 1 인의 법률 전문가;

1.2 전문가 패널 구성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현재 및 과거에 옥시레킷벤키저나 레킷벤키저 그룹의 다른 구성원에게 고용되거나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않았을) 것;
- (b) 현재 및 과거에 PHMG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인 또는 판매인에게 고용되거나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않았을) 것;
- (c) PHMG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된 지위에 기해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에게 고용되었거나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
- (d)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소송이나 배상신청(본 배상 방안에 따른 것을 포함함)에 관여하지 않을(않았을) 것;
- (e) 파산 또는 채권자들 일반과의 협약이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f) 범죄 경력이 없고, 자신이 속한 직능단체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직능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을 것;
- (g) 전문가 패널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건강하고 전문가 패널 구성원의 역할에 헌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및
- (h) 전문가 패널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을 것.

1.3 각 전문가 패널 구성원은 전문가 패널로 선임되기 전에 전문가 패널 선임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전문가 패널의 지위

2.1 전문가 패널 및 각각의 전문가 패널 구성원은 배상 방안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공정하게 행동한다. 전문가 패널 및 각각의 전문가 패널 구성원은 옥시레킷벤키저, 배상지원 사무국, 배상 지원 담당자, 신청인,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들의 주선자나 대리인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2.2 전문가 패널 및 각각의 전문가 패널 구성원의 역할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고, 심판관이나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 패널이 배상규정 6.6(a)조에 따라 배상 제안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가 아닌 한, 전문가 패널은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구속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며, 배상규정 6.9 조에 따라 조정된 배상

제안이 신청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이는 배상지원 사무국을 대신하여 (그리고 배상지원 사무국 대표의 승인을 받아) 신청인에게 배상 제안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전문가 패널의 기능

전문가 패널은 배상규정 1.3조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신청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4 전문가 패널의 자격상실 및 선임의 취소

4.1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가 패널 구성원은 전문가 패널에서 제외될 수 있다:

- (a) 본 별표 6 제 1 부 1.2조에 규정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또는
- (b) 배상규정(본 별표 6 포함) 또는 전문가 패널 선임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및/또는
- (c) 전문가 패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그러한 역할 수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4.2 전문가 패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 새로운 전문가 패널 구성원을 최대한 신속히 선임하거나 임시의 대체 패널 구성원을 선임한다. 3 인의 전문가 패널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전문가 패널의 기능은 일시 중지된다.

제 2 부 전문가 패널의 운영

1 일반규정

본 별표 6 및 전문가 패널 선임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전문가 패널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다.

2 전문가 패널의 활동의 효력

일부 전문가 패널 구성원과 관련하여 그 선임에 결함이 있었거나, 그 자격이 없었거나, 이미 사임하였거나, 혹은 의결권이 없었다는 점이 나중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전문가 패널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활동 및 결정은 해당 전문가 패널 구성원이 적법하게 선임되고, 자격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유효하게 취급된다.

별표 7
전문가 패널 결정문 서식

피해자 성명:	
신청인 성명	
신청번호:	

본 결정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귀하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귀하에게 드린 배상 제안을 저희 전문가 패널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배상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받으신 배상 제안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결정문은 저희가 귀하께서 받으신 배상 제안을 재검토한 결과 내린 결정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귀하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귀하께서는 다음의 일자에 배상 제안을 [기존 배상 제안 일자]
받으셨습니다:

제안된 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희는 귀하께서 받으신 배상 제안을 재검토 하여 [결정문 작성 일자]
본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의 결정

[저희는 배상 제안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옥시레킷벤키저가 저희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배상 제안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상 제안은 귀하, 옥시레킷벤키저, 또는 기타 제 3 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단순한 제안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배상규정 제 5 조에 따른 배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는 (필요한 경우 삭제)

[저희는 배상 제안을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저희는 배상지원 사무국이 귀하에게 배상 제안을 함에 있어서 배상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께서 받으신 배상 제안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답서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과 귀하께서 제공하여 주신 증빙서류들에 기초하여 판단한 결과, 저희는 귀하의 사건에서 배상 공식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는 (필요한 경우 삭제)

저희는 배상지원 사무국이 귀하에게 배상 제안을 함에 있어서 배상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께서 받으신 배상 제안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답서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과 귀하께서 제공하여 주신 증빙서류들에 기초하여 판단한 결과, 저희는 귀하의 사건에서 배상 공식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배상 제안의 특정 항목이 왜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본 결정이 귀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귀하는 [조정된/기존의] 배상 제안을 수락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배상 지원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미 배상 제안을 재검토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저희에게 배상 제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본 결정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저희의 검토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귀하의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귀하의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정은 배상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자 패널을 위해, 그리고 전문가 패널을 대표하여 아래 서명함:

일자:

별표 8
경과 보고서 서식

배상 방안 경과 보고서

1 경과 업데이트

[이 경과 보고서는 []자로 작성되었으며, []에서 []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중요 사실 및 수치

배상신청 등록 수	[]
신청자격이 없어 거절된 배상신청 수	[]
등록된 배상신청의 종류(사망/상해)	[]
결격처리 된 배상신청 수	[]
등록에서 배상 제안까지 배상신청 진행에 소요된 평균 시간	[]
배상 제안에서 배상 합의의 서명까지 배상신청 진행에 소요된 평균 시간	[]
서명된 배상 합의의 수	[]
전문가 패널에 의해 재검토된 배상 제안의 수	[]
전문가 패널의 재검토 결과 조정된 배상 제안의 수	[]